

▶ 2007. 10. 25. 배포
▶ 총 2 쪽 (사진 없음)

■ 진료비심사팀장 변 행 섭
TEL : (02) 2670-0417
휴대폰 : 017-729-2845

“산재환자를 위한 산재보험 재활수가 확대 실시”

- 근로복지공단(이사장 김원배)은 산재환자 재활에 필요한 급여항목을 개발함으로써 산재환자의 적극적인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재보험 시설에 대하여 산재보험 재활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- 그 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하여 왔으나, 건강보험의 경우 급여범위 및 인정기준의 제한이 많아 산재환자의 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.
- 이에 따라 2006년 노동부 정책 연구과제로 수행된 「의료재활 항목 수가개발 등에 관한 연구」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전문의 등 전문가 회의를 거쳐 산재보험시설부터 시범 실시하게 된 것이다.
- 산재재활수가 시범사업은 산재의료관리원 산하기관 중 재활전문센터, 운동재활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인천중앙병원, 대전중앙병원, 창원병원 3개소에서 시행한다.
- 시범실시 대상은 산재환자 재활에 필요하나 현재 비급여항목인 집단 운동치료, 인공디스크, 수중운동 등 17개 항목이며, 아울러 신경학적

검사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인 10개 항목에 대해서도 그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시범실시 대상에 포함하였다.

- 시범실시항목 중 집단운동치료는 의사, 재활간호사, 직업치료사 등이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산재환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또는 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것이며,
 - 인공디스크는 건강보험 인정기준에서 비급여로 고시한 치료재료를 이용하여 산재환자에게 디스크수술을 실시한 경우 산재 재활수가로 인정하며, 수중운동은 수중운동치료 대상자에게 1:1로 전문재활치료를 하거나 그룹치료한 경우 재활수가로 인정하게 된다.
 - 아울러 재활수가 시범실시 사업은 종래 신경계 질환에 대해 월 1회 인정하던 신경학적 검사를 주1회 이내로 완화하여 인정하고 있다.
- 산재재활수가에 대한 시범 실시 후에는 산재환자의 만족도 조사, 치료효과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 평가하고, 그 효과가 입증된 항목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재활수가로 개발하여 향후 전체 산재지정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.
- 산재재활수가의 개발은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산재환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재활 치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재환자의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직업 복귀를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.